## <의안번호 제2007 - 63호>

# 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── 검 토 보 고 서 ─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12. 4.

나. 제 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. 12. 4.

# 2. 제안이유

- 면사무소와 복지회관, 보건지소를 한 곳에 모아 산만한 소재지 를 정비하고 면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
- 당초 계획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함
-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보건지 소를 이전 신축하여 진료환경개선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## 3.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: 천원)

재산명	재산 종별	재 산 소 재 지	물건및 지 목	수량(m²)	예정금액	비고	
계					2,370,608		
주상면행정타	토지	주상면 도평리 562	토지	4,774	483,000	(당초면적:2,772)	
운설치	건물	외 8필지	건물	926	1,360,000	( 6 年 년 국 2,772)	
주상보건지소	건물	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	건물	335	527,608	토 지 (주상면 행정타운과 연계)	

# 4. 참고사항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, 제14조

# 5. 관련자료

○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취득대상 목록

(단위 : 천원)

							· ·	• 연단)
일련 번호		재 산 표 시		│ ─ 예정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	비고
번호	구분	소 재 지	면적	1 41/8/14				
		소 계	4,474	483,000	2008년	주상면 행정타운 신축	21 — 21	
1		주상면 도평리 562	132				최도현	
2		주상면 도평리 716	416				최도현	군비 (당초면적 :2,772)
3		주상면 도평리 716-1	265				최도현	
4		주상면 도평리 718	1,380				최도현	
5	토지	주상면 도평리718-1	579				최도현	
6		주상면 도평리 721-1	908	- (추가매입)			백형만	
7		주상면 도평리 721-2	255				백윤흠	
8		주상면 도평리 748-1	334				이종범	
9		주상면 도평리 748-2	205				이종범	
10	건물	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	926	1,360,000	2008년		거창군	
11	건물	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	335	527,608	2008년	주상면보건지소 이 전 신 축	거창군	국318,405 도159,203 군 50,000

# 6. 검토의견

○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거창군 도평리 562 외 8필지에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및 주상면 보건지소를 건립하 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 ◆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

- 현 주상면사무소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 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ㆍ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.
-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에 부지면적 4,474㎡, 건물면적 926㎡로 총사업비 1,843,000천원 중 토지매입비 480,000천원, 건물신축비 1,360,000천원으로 면사무소(1층), 복지회관(2층)을 통합적 으로 한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- 그러나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중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 비안에 우회도로 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하는데 저촉되지 않도록 군 관리계획상 도로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◆ 보건지소 이전 신축

- 현 **주상면 보건지소**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 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 하여,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서
-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27,608천원 중 이전건축비 477,608 천원(국비 318,405천원, 도비 159,203천원)은 확보[보건복지부・ 도. 보건위생과-34379('07.10.17)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]되 었으며, 군비(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) 50,000천원을 '08 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임.
-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,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.

# 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췌

##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##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]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인 재산.
-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-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인 재산
-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・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
- 2.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환지
- 3.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처분
-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
- 6. 『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- 7.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
- 8.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
- 9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
- 10.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물납
- 11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

- 12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
- 13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·처분 14.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
- ③제1항에서 "1건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동일한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
- 3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· 처분하는 경우
- 4.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 5.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·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. 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.

#### [공유재산관리조례]

#### 제 12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

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 제 14조 (공유재산관리계획서)

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